
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

전세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『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』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4. 3. 8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1. 사업 개요

- ☐ 사업명 :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
- ☐ 지원대상 :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(HUG, HF, SG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①(청년) 5천만원, ②(청년 외) 6천만원, ③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- ☐ 지원내용 : 기 납부한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 (최대 30만원 한도)
- ☐ 신청기간 : 2024.3.4.~2024.12.31(예산부족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)
- ☐ 신청방법 : 정부24(www.gov.kr)* 온라인 신청
또는 방문(중구청 주택과) 접수

*정부24(www.gov.kr)에서 검색창에 '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' 검색

2. 신청 자격

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

○ (주소) 주민등록상 서울시 중구 거주 무주택자

○ (주택) 중구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

○ (소득) 연소득 ①(청년) 5천만원, ②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③(청년 외) 6천만원,

- (청 년) 신청일 기준 만 19세~만 39세 이하* 연소득 5천만원 이하

*신청일 기준 연령 (예) '24.3.4 신청 시, 1984.3.5.(만39세)~2005.3.4.(만19세) 출생자

- (신혼부부)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(연령 무관, 부부 합산 연소득 7.5천만원 이하

- (청년 외)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

○ (보험)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

※ 보증(보험)기관 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서울보증보험(SGI)

※ 신청 제외대상

- 주택 소유자(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) ※ 배우자 포함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- 기타 서울시(자치구 포함)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
 - *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(일반적 전세계약 기간) 추가 지원이 제한
- 외국인(외국국적동포 포함) 및 재외국민

3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☐ 신청방법

○ (온라인) 정부24(www.gov.kr) 홈페이지 신청

- 정부24(<https://www.gov.kr>) 접속 및 로그인



→ [화면 중간] 자주찾는 검색 → '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' 입력
(<https://www.gov.kr/svc/611000019599>)

○ (오프라인) 중구청 주택과 방문 접수

- ※ 지원 대상자 ‘본인’ 신청이 원칙이나,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
(위임장,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)
- ※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,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
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중구청 주택과로 방문하여 신청

□ 제출서류

- ※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
- ※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

제출서류
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
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
③ 임대차계약서
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
⑤ 혼인관계증명서
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신청일이 7.1.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)
* 소득이 없는 경우 “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” 제출
**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
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
⑧ (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)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, 신분증 사본, 주민등록등본

4. 선정결과 발표

□ 선정기준

-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

□ 심사 및 결과통지

-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(필요 시 추가 15일 연장 가능)

○ 정부24 'MyGov>나의 신청내역' 확인, 신청자 개별 문자 또는 메일 발송

※ 필요시 서류보완 가능하며,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

□ 보증료 지원 :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

5. 이의신청

□ 신청기한 : 결정 통지(부적합)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

□ 신청방법 :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

□ 결과통지 : 30일 이내

6. 기타 사항

□ 유의 사항

○ 아래와 같은 경우 심사제외,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
하시기 바랍니다.

-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
- 제출서류 또는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-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

○ 지원 대상자 선정에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응하지
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□ 신청·접수 관련 문의처

○ 중구청 주택과 ☎ 02-3396-5702

- 붙임 1. 보증료 지원 신청서
2. 서약서
3. 이의신청서